

강릉원주대학교와 삼척장호1리어촌계 간 강원어촌 발전을 위한 1사 1촌 교류협약서

강릉원주대학교와 삼척장호1리어촌계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여 강원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우호적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, 기술과 인력 교류 및 기타 인프라 지원 등 상호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의 범위) 양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보 및 인적·물적 자원교류 협력
2. 삼척장호1리어촌계 마을홍보 및 6차산업화를 위한 제 협력
3. 강릉원주대학교 교직원의 장호1리어촌계 체험관광시 할인(50%)혜택 제공
4. 그 밖의 지속적인 발전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

제3조(신의성실의 원칙) 양 기관은 본 협약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성실히 협력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력한다.

제4조(협의체 구성) ① 제2조에서 합의한 협력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, 절차에 대하여는 양 기관의 실무부서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수정 및 변경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협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로 협의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 기관의 비공개 정보 등을 상호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 양 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정보의 공개를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(효력 및 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② 본 협약은 그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종료할 수 있으며, 협약의 종료를 원하는 기관이 상대방에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의체를 통하여 검토 후 종료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상호 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, 양 기관의 협의체를 통해 그 내용의 추가 또는 별도의 부속서류를 마련하여 협력하도록 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8월 30일

국립강릉원주대학교
총 장 반 선 섭

삼척장호1리어촌계
어촌계장 홍 영 기

반 선 섭

홍 영 기